

반 소 장

사 건 2000가단0000 건물명도

피고(반소원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 ㅇㅇㅇ-ㅇㅇㅇ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원고(반소피고)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반소원고)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.

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

반 소 청 구 취 지

- 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금 21,912,80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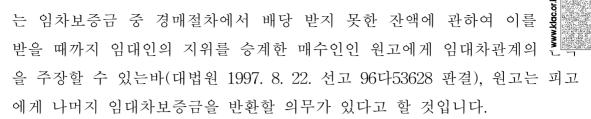
청 구 원 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대항력

- 가. 피고(반소원고, 다음부터 '피고'라고 함)는 19○○. 6. 29. ○○시 ○○구 생물 길 ○○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○○○㎡(다음부터 '이 사건 주택 라고 함)의 소유자인 소외 김◈◈와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3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,000,000원을, 같은 해 7. 10.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잔금 21,000,000원을 소외 김◈◈에게 각 지급하였습니다.
- 나. 그 뒤 피고는 19○○. 2. 20.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24. 전입신고를 하였는데, 19○○. 5.경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나고 물탱크가 터지는 문제가 생기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살림도구를 일부 남겨놓고 시정장치를 한 다음 회사사택에서 생활하는 한편 소외 김◈◈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9. 7. 소외 이◎◎에게 전대하였으며, 소외 이◎◎는 곧바로 그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주택의 지번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. 그 뒤 피고는 20○○. 9.경에 소외 이◎◎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소외 이◎◎는 처음 전대계약을 체결한 20○○. 9. 7.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
- 다. 따라서 피고는 19○○. 7. 10.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이래로 현재까지 피고의 직접점유 또는 전차인인 소외 이◎◎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의 주민등록에 이어 소외 이◎◎의 주민등록이 19○○. 2. 24.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임대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입니다.

2.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 및 소유권이전등기

- 가.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외 박●●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19○○. 2. 2. ○지방법원 ○○지원 ○○타경○○○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배당요구를 하여 임차보증금 23,000,000원 중 금 1,087,191원을 배당 받았습니다.
- 나.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경매절차에서 소외 ○○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로 배당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주택과 위 토지가 일괄 경매되었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○○협동조합이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
- 다. 한편, 원고(반소피고, 다음부터 '원고'라고 함)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금 3,100,000원에 매수하여 20○○. 12. 16.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
- 라. 따라서 피고의 배당요구에 의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고, 다만 피고

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야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을 제1호증 1 내지 3 각 임대차계약서

1. 을 제2호증의 1, 2 각 주민등록표초본

1. 을 제3호증의 1.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을 제4호증 배당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반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반소원고(본소피고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	,,,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(민사소
제출법원	본소 계속법원 제 출 기 간 가입 전 1 8 1 1 3 1 3 1 3 1 3 1 3 1 3 1 3 1 3 1
제출부수	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
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※ 아래(1)참조
l ul Ó	단,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의
비 용	인지를 붙여야 함(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)
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	•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X /1 12	·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
	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
	접점유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,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
	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「당해 주택」
	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(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)가 아니어서 그 자의
	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간
	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
	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,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
	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
	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음(대법원
	2001. 1. 19. 선고 2000다55645 판결).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점유하여
	거주하지 않고 간접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
	라도,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
기 타	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
	력을 취득함(대법원 1995. 6. 5.자 94마2134 결정, 1994. 6. 24. 선고 94다3155 판
	결)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
	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
	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내
	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
	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
	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
	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(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다카2509 - 교경)
	판결).
	•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
	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
	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,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
	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
	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인
	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
	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함(대법원
	2002. 10. 25. 선고 2002다43370 판결).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
	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, 임대인의 동시이행
	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
	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, 임
	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
	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(대법원 2002. 2.
	26. 선고 2001다77697 판결).



※ (1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